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(제정) 2004.04.30 조례 제1674호 (일부개정) 2008.10.08 조례 제1863호

(일부개정) 2012.12.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

(일부개정) 2014.04.11 조례 제2075호

(일부개정) 2014.08.14 조례 제2088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,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10.8., 2012.12.31.>
- 제2조(지원대상)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로 산청군 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. <개정 2008.10.8.>
- **제3조(지원금액)** 화장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 단, 인접 시·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%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<개정 2012.12.31., 2014.4.11.>
- 제4조(화장장려금의 지원방법) ①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.
- 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〈조례 제1674호, 2004.4.30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조례 제1863호, 2008.10.8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조례 제2022호, 2012.12.31.〉 (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〈조례 제2075호, 2014.4.11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조례 2088호, 2014.8.14.〉 (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 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